

# 신체장애 등급 및 장애평가

- 흉복부 장기 및 산재보상법상 척추 장애 -

## 1. 흉복부 장기 등의 장애

### 가. 장애등급표

| 장애 등급      | 해 설  |
|------------|--|
| 제 1 급 4 항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 제 2 급 6 항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 제 3 급 4 항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상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제 5 급 7 항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제 7 급 5 항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            | 13 항 양쪽 고환을 잃은 사람.                               |
| 제 8 급 11 항 |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
|            | 14 항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 제 9 급 16 항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 제 11급 9 항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
| 제 12급 12 항 |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 제 14급 9 항  |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 나. 흉부 장기의 장애



(1) “흉부장기”라 함은 심장, 신장, 폐장, 늑(흉)막, 횡경막 등에 다각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변화가 인정되고 그

기능에도 장애가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2) 중등도의 흉부장기의 장애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자는 제1급을 인정한다.

(3) 고도의 흉부장기의 장애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자는 제2급을 인정한다.

(4)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은 가능하나 일상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는 제3급을 인정한다.

(5) 흉부장기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4분의 1정도만 남은 자는 제5급을 인정한다.

신체장애 등급 및 장애평가

(6) 중등도의 흉부장기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정도만 남은 자는 제5급을 인정한다.

(7)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애로 인하여 취업가능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는 제9급을 인정한다.

(8)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에 지장이 있는 자는 제11등급을 인정한다.

다. 복부장기의 장애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 신장장애

(1) 요로 변경술 후 신루, 신우루, 노관피부문합, 요관장문합을 남긴 채로 치유의 상태에 달한 자는 제7급을 인정한다.

(2) 명백하게 상처에 의한 만성신우증(신장염), 수신증은 제7급을 인정한다.

(3) 요양의 종결단결에서 요도루, 방광루공과 수회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루공이 남아 일정한 기간 후 다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그 상태에서 일단 치유한 자는 제11급을 인정한다.

(4) 방광괄약근의 변화에 의한 것이 명백한 요실금은 제11급을 인정한다.

마. 방광장애

(1)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자는 제3급을 인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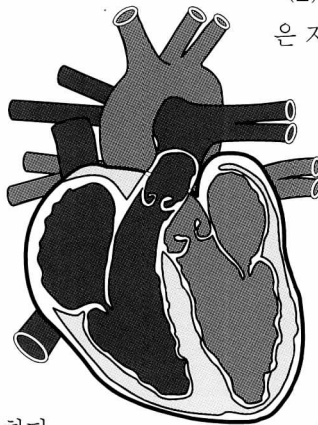
(2) 위축방광(용량 50cc 이하)인 자는 제7급을 인정한다.

(3) 항상 노류를 동반하는 경도는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의 배뇨 통은 제11급을 인정한다.

바. 요도협착

(1) 사상 부지(Bougie)를 필요로 하는 자는 제11급을 인정한다.

(2) 요도협착으로 신장기능의 장애가 남은 자는 신장의 장애로 간주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사. 생식기 장애

(1) 음경의 대부분이 결손된 자, 반혼으로 인한 질구협착 등으로 생식능력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성교불능인 자는 제9급을 인정한다.

(2) 양쪽 고환이 결손된 자는 제7급을 인정한다.

(3) 음위가 다른 장애에 수반되어 생기는 경우에는 당해 다른 장애의 등급을 인정한다.

(4) 가벼운 요도협착, 음경의 반혼 또는 경질 등으로 인한 음위가 있는 자와 명백한 지배신경의 변화가 인정되는 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아. 준용등급결정

(1) 요도 협착장애 중 요도부지 프렌치 제20번(네라톤 카텔 제11호 상당)이 경우 통과하고 때때로 확장술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자는 제14급

을 인정한다.

(2) 한쪽 고환의 결손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위축이 있는 자는 제11급을 인정한다.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척추 장애

### 가. 척추체의 제관절 표준각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관련)  
[별표 3. 개정 99. 11. 7]

| 관절명 |     | 구분       | 측정부위     | 표준운동각도 |       |
|-----|-----|----------|----------|--------|-------|
| 척추  | 경부  |          | 전굴       | 45     |       |
|     |     |          | 후굴       | 45     |       |
|     |     |          | 좌굴       | 45     |       |
|     |     |          | 우굴       | 45     |       |
|     |     |          | 좌회전      | 80     |       |
|     | 흉요부 |          | 우회전      | 80     |       |
|     |     |          | (운동가능영역) |        | (340) |
|     |     |          | 전굴       | 90     |       |
|     |     |          | 후굴       | 30     |       |
|     |     |          | 좌굴       | 30     |       |
|     |     | 우굴       | 30       |        |       |
|     |     | 좌회전      | 30       |        |       |
|     |     | 우회전      | 30       |        |       |
|     |     | (운동가능영역) |          | (240)  |       |

### 나. 척추장애 등급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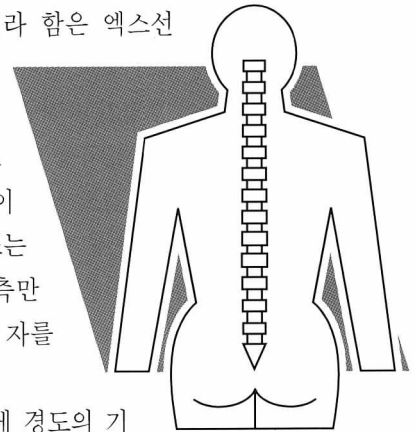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관련)  
[별표 2. 개정 2000. 6. 27]

| 급 수   | 장 해                                    |
|-------|--|
| 제 6급  |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
| 제 8급  | 척추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
| 제 10급 | 척추에 기능장애가 남았으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         |
| 제 11급 |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
| 제 12급 |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 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

### 다. 척추의 장애

(1)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35° 이상의 구배 또는 20° 이상의 측만 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척추에 경도의 기형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구배 또는 10° 이상의 측만 변형이 있는 자, 압박골절이 추체 높이 50% 이상인 자 또는 척추에 엑스선상 불안정성이 확실한 자를 말한다.

(3)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이 인정되거나 경미한 구배 또는 측만 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4) “척추에 뚜렷한 기능장애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를 말한다.

(5) “척추에 기능장애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1개 이상의 척추 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를 말한다.

(6) “척추에 기능장애가 남았으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추체 높이가 30%이상 50%미만의 골절, 안정 방출성골

신체장해 등급 및 장해평가

절, 찬스씨골절이 인정되거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자를 말한다.

라. 추간판탈출증

(1)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 MRI, 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 그 증상을 인정한다.

(2)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장해등급은 수술여부에 관계 없이 운동장해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후유신경증상의 유무와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추간판 제거후 척추제고정술을 한 경우에는 후유신경증상과 고정술에 해당되는 등급중 상위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3) 요통, 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검사결과에 이상소견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단순한 고의나 과장이 아니라고 의학적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4) 감각이상, 요통, 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12급으로 인정한다.

(5)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0급을 인정한다.

(6)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을 경우에는 제9급을 인정한다.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해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7)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에는 제8급을 인정한다.

마. 기타의 체간골의 장해

(1)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나체가 되었을 때 그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자를 말한다.

(2) 늑골의 변형은 그 개수, 정도, 부위 등에 관계 없이 늑골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인정한다. 늑연골의 경우도 또한 같다.

바. 준용등급결정

(1) 하중기능의 장해에 대하여는 장구(콜셋트 등)를 사용하더라도 기거에 곤란을 느끼는 정도인 경우에는 제6급, 그 정도는 되지 아니하나 항상 장구를 필요로 하는 정도인 경우에는 제8급을 인정한다.

(2) 기타의 체간골의 2개이상의 골에 각각 뚜렷한 기형이 남은 경우에는 조정의 방법에 의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